

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5.12.30.>

보상금등 지급신청서(사망자·행방불명자용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	처리기간		5개월
특수임무수행자	성명(한자) () 생년월일				
	등록기준지		당시 주소		
① 신청사유	[]사망	년	월	일	사망
	[]행방불명	년	월	일경	행방불명
당시 가족사항	관계	성명	나이	관계	성명
② 특수임무 관련 주요내용	입대 등 날짜		소속부대		
	전역 등 날짜		기수령보상금		
사망(행방불명) 경 위	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				
③ 신청인	성명(한자) () 생년월일				
	주소 (전화번호:)				
	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		의		

본인은 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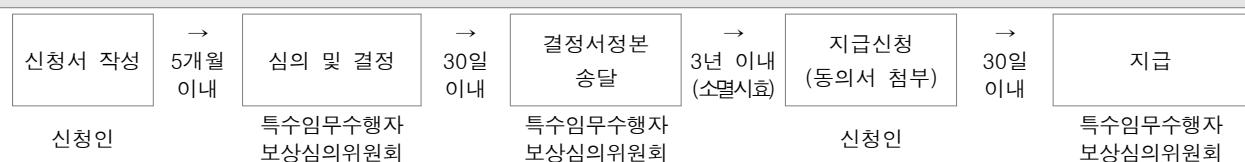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- ①란에는 사망이나 행방불명 중 해당되는 난의 []에 "✓"를 표시하고 날짜를 적습니다.
 - ②란에는 특수임무수행자가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주요내용을 적되, 기수령 보상금은 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가 지급한 위로보상금등을 적습니다.
 - 유족대표가 선정되지 않아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③란에 적지 않고 별지 제6호서식에 모든 유족을 적어 첨부합니다.

처리절차



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,

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거나

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60일 이내(혹은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5개월이 경과한 후)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